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74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6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3일,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- 상정일자 :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4년 4월 23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서식2, 별표서식7)
-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변경(안 별표서식3)

-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(안 제21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협의사항
  -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 -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 -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  -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  -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  -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  -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 :  
해당없음
- 기타
  - 입법예고 (2024. 2. 8.~2. 28.) 결과: 의견없음
  -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# 1 개정안의 개요

##### 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- 본 개정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규정신설 및 변경을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.

##### □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종료 개요

-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예 특화사업 운영을 통해 공예기업과 시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1)에 따라 설치·운영된 시설이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됨.
- 이는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2023.7.26.) 유사사업(여성창업플라자) 비교 후 통·폐합,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예산조정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'24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('23.12.15.)후 2024년부터 사업종료하게 된 것 임.<sup>2)</sup>

1)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 
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2. 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)참고: 서울여성공예센터는 현재 3월30일로 위탁기간을 종료하고 재산반납목록(불용물

**2 주요사항 검토**

□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제 삭제

(안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 2, 별표7)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1의2. (생략)</p> <p>2. <u>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</u>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의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제6호까지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) 제4조제2호----- ----- 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6조(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</p> <p>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</p> <p>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</p>	<p>&lt;삭제&gt;</p>

품 처분결과 등)과 정산보고서 제출(4월 말) 과정 중이며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6월 말경 실시 예정임.(서울시 제공)

현 행	개 정 안
<p>각 호와 같다.</p> <p><u>1.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</u></p> <p><u>2.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(성장)지원 사업 추진</u></p> <p><u>3.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 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<u>4.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</u></p> 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이하 "이용자"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1의2. (생략)</u></p> <p><u>2. 여성공예센터: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</u>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이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현행 조례 제4조는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안 서울여성공예센터가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2, 별표7을 삭제하고자 함.
- 개정안은 제4조제2항의 센터를 삭제하고 각 조와 호는 현행과 같이 규정하나 제4조제1호의2 서울가족플라자 시설은 제4조제2호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고 있음.

□ 이용료의 반환 규정 구체화 조항 신설(안 제21조)

개 정 안
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----- ----- <u>납부한 이용료</u> -----.
1. <u>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</u>
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</u>
3. <u>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</u>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에 따르면<sup>3)</sup>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개정안은 현행 제21조(이용료의 반환) 규정에서 시장의 귀책사유, 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제1호부터 제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3호까지 신설하고자 함.

- 이용료의 경우 사전에 납부하여 그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, 이용을 포기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<sup>4)</sup>
- 이에 현행 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, 개정안 제21조제1호의 구체적 반환규정을 두도록 함은 타당함.

#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조문 정비는 필요성이 인정됨.

4) 법제처 「법령입안심사기준2023」 472, 202p. 수수료 반환 규정 및 반환에 관한 입법 방식 참고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

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7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종료 및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이전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서울여성공예센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제2호, 제6조, 제18조제1항제2호, 별표2, 별표7)
-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주소 변경(안 별표3).
- 이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(안 제2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해당없음
-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협의사항
  -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 -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2. 8.~2. 2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나리(☎2133-5019)

##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제6호까지 및 제1의2호”를 “제6호까지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5조의2를 제6조로 한다.

제6조(종전의 제5조의2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제1의2호”를 “제4조제2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취소에 관하여”를 “취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”을 “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2호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제하거나 줄일”을 “감경하거나 면제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8조제1항제1의2호”를 “제18조제1항제2호”로, “면제하거나 줄일”을 “감경하거나 면제할”로 하며,

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줄인다”를 각각 “줄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면제하거나 줄일”을 “감경하거나 면제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“줄인다”를 각각 “줄임”으로 한다.

제2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이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이용료”를 “납부한 이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

제23조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4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5조 중 “제7호까지 및 제1의2호”를 “제7호까지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여성관련시설”을 “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 경우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7을 각각 삭제하고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(제7조 관련)

명 칭	위 치
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	동작구 노량진로 10(대방동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1의2. (생략)</u></p> <p>2. <u>여성공예센터 :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6호까지</u> 및 <u>제1의2호</u>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p> <p><u>제5조의2(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) 제4조제1의2호</u>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제6조(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) ① 제4조제2호</u>에 따른 <u>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</u></p>	<p>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제6호까지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제6조(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) 제4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</u></p> <p>2. <u>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(성장)지원사업 추진</u></p> <p>3. <u>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4. <u>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</u></p> <p>제10조(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<u>취소에 관하여</u>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7조, 제48조 및 영 제28조, 제29조를 준용한다.</p> <p>제12조(관계법령의 적용) 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 「<u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</u>」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</p>	<p>제10조(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취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2조(관계법령의 적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</u>」-----</p>





현행	개정안
<p>줄일 수 있다. 다만, 창업공간은 제외한다.</p> <p>1. 양육자의 일·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자치구는 제외한다)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<u>줄인다</u>.</p> <p>2. 「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: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<u>줄인다</u>.</p> <p>③ 시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이용료를 <u>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</u>.</p> <p>1.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: 해당 이용료 각각 면제. 다만, 제17조제2항제1호의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100분의 50을 <u>줄인다</u>.</p>	<p><u>면제할</u> ----.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줄임</u>.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줄임</u>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감경하거나 면제할</u> 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줄임</u>.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24조(운영위원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</u>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제26조(관리·운영규정의 제정 등) ①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에 <u>관하여 필요한</u>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7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<u>여성관련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</u>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4조(운영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----- <u>제7호까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6조(관리·운영규정의 제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필요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<u>필요한 경우 여성관련시설</u>----- <u>대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서울여성공예센터 폐지 및 여성능력개발원 이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김나리 주무관(02-2133-5019)